


의정활동보고서



제273회 정례회(2014. 9. 23 ~ 10. 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오늘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추석명절을 비롯한 비회기 동안 도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장 방문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도의회가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
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변화와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집행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함께하는 의원연수회 개최, 열린의회를 위한 역대의장
정책간담회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 등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대상기관 선정과 감사자료 요청 등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하겠으며 또한 업무 보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업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결산 관련 자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쯏록,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259
II. 의사일정		261
III. 의안처리		269
IV. 민원처리		270
V. 본회의 보고사항		272
VI. 5분 자유발언		289
□ 김인중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비례)		289
□ 이정호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포항)		293
□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비례)		297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포항)		301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청송)		305
□ 이흥희 의원(농수산위원회/구미)		308
□ 김정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비례)		311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경주)		314

부 록

☐ 조례안(12건)	319
☐ 규칙안(1건)	404
☐ 동의안(1건)	411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는 2014년 9월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8일까지 16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5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9월 23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먼저 김인중 의원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 이정호 의원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사고대응 관련”, 김위한 의원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정체성 확립 관련”, 박문하 의원의 “진취적인 국제통상교류정책 필요성”등 폭넓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 2차 본회의는 10월 8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윤종도 의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증대 관련”, 이흥희 의원의 “대구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의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협회 설립 관련”, 최병준 의원의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또한 조례안 12건,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 처리가 이어졌다.

그 중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결산안 2건, 규칙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이밖에 회기 중에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칠곡 팔공산 도립자연휴양림, 상주 낙동강 이야기나라(역사이야기촌), 김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등 도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3대 문화권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의 새로운 생태문화관광개발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송 가래곡 저수지와 청송사과 유통공사(APC)를 방문하여 저수지의 노후화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사전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조속한 정비를 부탁하였으며, 청송사과 유통공사에서는 운영현황 청취를 한 후 국내외 시장개척·수출활성화와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기대한다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14:00

2. 회 기

가. 회 기 : 2014년 9월 23일 ~ 10월 8일(16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0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5	1	2	3	1	2	1	1	3	1
누 계	60	5	7	8	6	7	7	5	7	8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3(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김인중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이정호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안전처리 ○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0. 8(수)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이흥희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정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안전처리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8(수) 11:00 (제2차)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3(화) 15:00	□ 안전심사 ○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의회사무처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9(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대변인실 - 미래전략기획단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기획조정실	
9. 30(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창조경제산업실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일자리투자본부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3(화) 15:20 (제1차)	☐ 안전 심사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계류)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여성정책관실	
9. 24(수) 11:00 (제2차)	☐ 안전 심사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안전행정국 - 경북도립대학교 - 감사관실 - 공무원교육원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10. 8(수) 10:40 (제3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4(수) 11:00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3(화) 15:00 (제1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9. 24(수)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농축산국 - 동해안발전본부 -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4(수) 11:00	☐ 안전심사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소방본부 - 건설도시방재국 - 도청이전추진본부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30(화) 10:40	☐ 안전심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2(목) 10:50 (제5차)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 감사관·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 - 기획조정실·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6(월) 10:30 (제6차)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 의회사무처 -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10. 7(화) 14:00 (제7차)	☐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3(화) 11:00 (제1차)	☐ 주요 업무 보고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9 (70)	21 (70)	16 (51)	5 (10)					
조 례 안	소 계	12 (30)	12 (30)	8 (23)	4 (7)					
	의 회 제 안	4 (14)	4 (14)	4 (13)	0 (1)					
	도지사 제 출	8 (15)	8 (15)	4 (9)	4 (6)					
	교육감 제 출	0 (1)	0 (1)	0 (1)						
규 칙 안		1 (1)	1 (1)	1 (1)						
예산·결산		0 (4)	2 (4)	2 (3)	0 (1)					
동의·승인		2 (4)	2 (4)	1 (2)	1 (2)					
건 의 안		0 (1)	0 (1)	0 (1)						
결 의 안		0 (8)	0 (8)	0 (8)						
기 타 안 (청원포함)		4 (22)	4 (22)	4 (22)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11)	1 (5)		(1)			1 (2)	1 (3)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1 (1)			
행 정 보건복지	1 (1)	1 (1)								
문 화 환 경	(1)							(1)		
농수산	(2)	(1)					(1)			
건 설 소 방	1 (5)	(2)		(1)				1 (2)		
교 육	(1)	(1)								
특 별 위 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3 (9)	3 (9)				2 (2)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1 (1)				
행 정 보건복지						1 (1)
문화환경	1 (1)	1 (1)				
농 수 산	(2)	(2)				
건설소방	1 (4)	1 (4)				1 (1)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I. 의안 접수사항: 15건(조례안 12, 결산안 2, 동의안 1)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4. 7. 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 (교육위 제외) (2014. 9. 15)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 획 경 제 (2014. 9. 15)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수용의원 (2014. 9. 12)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4. 9. 15)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
경상북도지사 (2014. 9. 17)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4. 9. 17)
경상북도지사 (2014. 9. 12)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 화 환 경 (2014. 9. 15)
김명호 의원 외 59명 (2014. 9. 12)	경상북도산립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한창화 의원 외 8명 (2014. 9. 12)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2014. 9. 15)
남진복 의원 외 10명 (2014. 9. 12)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4. 7. 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 육 (2014. 9. 15)

2. 조례 공포사항 : 15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9. 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	2014. 9. 22 (제3559호)
"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560호)
"	"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61호)
"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62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563호)
"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64호)
"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65호)
"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566호)
"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67호)
"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68호)
"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 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69호)
"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70호)
"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71호)
"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72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 9. 22 (제3558호)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2014 한국관광의 별 수상기념 상패 조형물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5(금) 15:00
 - 장 소 : 포항 죽도시장 입구
 - 참 석 : 장두욱 의원
- 2014 안동한지축제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6:00
 - 장 소 : 풍산읍 한지문화마을
 - 참 석 : 김위한 의원
-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4:00
 - 장 소 :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 제14회 경상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4:00
 - 장 소 : 의성문화회관
 - 참 석 : 김수문 의원

- 제14회 경북과학축전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4:00
 - 장 소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 참 석 : 김응규 의원

-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환영리셉션 및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7:30, 19:3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환영리셉션), 경주 황성공원(개막식)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의원 26명, 총 29명

- 제7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가족걷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3(토) 09:3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인중 의원

- 제26회 경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13(토) 11:00
 - 장 소 : 성주 성주체육관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 제1회 안강·강동·기계 6·25참전 승전기념행사
 - 일 시 : 2014. 9. 15(월) 10:30
 - 장 소 : 경주 안강지구 전승비
 - 참 석 : 이동호 의원

- 소방특별조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4. 9. 15(월) 17:30
 - 장 소 : 문경STX리조트
 - 참 석 : 박영서 의원
- 2014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0:00
 - 장 소 :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구자근 위원장
- 도 명예감시관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1:00
 - 장 소 : 포항팔로스호텔
 - 참 석 : 박문하·박용선 의원
- 2014 해양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4:00
 - 장 소 : 포항 영일만항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한창화 위원장,
장두욱·박문하·박용선·이상구·장용훈·조주홍 의원
- 2014년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4:00
 - 장 소 : 도청 제3회의실
 - 참 석 : 황재철 의원

○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4:30
- 장 소 : 포항 중앙상가 주변
- 참 석 : 장두욱 의원

○ 도의회 국제친선연맹단 사할린 방문

- 일 시 : 2014. 9. 16(화) ~ 20(토)
- 장 소 : 러시아 사할린주 의회
- 참 석 : 한혜련 단장, 김봉교·곽경호·김인중·
박문하·윤종도·최병준 의원

○ 2014 경상북도 일가양득 캠페인 및 일자리 창출 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4. 9. 17(수) 10:3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이진락 의원

○ 2014 경북 일자리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4. 9. 17(수) 11:00, 15:0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홍진규·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이동호·이진락 의원

- 제6회 상주화령장전투 전승 기념식
 - 일 시 : 2014. 9. 17(수) 14:00
 - 장 소 : 상주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 · 이운식 의원
- 제7회 경북 식품박람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17(수) 15:00
 - 장 소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김정숙 · 이진락 · 최태림 의원
- 2014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0:00
 - 장 소 :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배진석 의원
- 제64주년 영천대첩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2:0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김수용 의원
- 삼성 ‘드림樂서’ 드림토크 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4:3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상북도·경산시 ⇔ “H”사 MOU 체결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4:30
 - 장 소 : 경산시청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오세혁 의원
- 제2회 전국환경음악 Festival 및 에코그린합창단 정기 연주회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9:00
 - 장 소 : 구미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제10회 전국 우리말 응변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0: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 의원
- 2014 경북동호인클럽 야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1:00
 - 장 소 : 포항야구장
 - 참 석 : 장두욱 의원
- 박약회 「제37차 유교문화학술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4:00
 - 장 소 : 성주 체육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이수경 의원

○ 제29회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8:00
- 장 소 : 안동 리첼호텔
- 참 석 : 장대진 의장

○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22(월) 14: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시·군 단위 행사】

○ 추석맞이 천하장사 씨름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6(토) ~ 9. 8(월)
- 장 소 : 상주실내체육관
- 참 석 : 강영석·이운식 의원

○ 보름爰는 보문爰 보문호반 달빛걷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8(월) 18:30
- 장 소 : 호반광장
- 참 석 : 최병준 위원장

○ 제14회 강구면민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4. 9. 9(화) 10:00
- 장 소 : 영덕 강구대게축구장
- 참 석 : 조주홍·황재철 의원

- 제32회 서면 면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9(화) 10:30
 - 장 소 : 경주 아화초등학교 운동장
 - 참 석 : 이동호 의원
- 김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08:00
 - 장 소 : 김천 KT&G김천공장 운동장
 - 참 석 : 나기보 의원
- 제1회 칠곡군 사회복지대회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0:00
 - 장 소 : 경북과학대학교 체육관
 - 참 석 : 박경호·김정숙·김창규 의원
- 2014 건전생활실천특강 및 회원수련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1:00
 - 장 소 : 영주국민체육진흥센터
 - 참 석 : 박성만 의원
- 안전행정부장관 민생현장 방문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1:20
 - 장 소 : 영양군청
 - 참 석 : 남천희 의원

- **건강 새마을조성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9. 12(금) 14:00
 - 장 소 : 남후면사무소
 - 참 석 : 김위한 의원
- **군립어린이집가족사랑운동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9. 13(토) 10:00
 - 장 소 : 울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장용훈 의원
- **2014 구미 전국 전통연희축제 참석**
 - 일 시 : 2014. 9. 13(토) 11:00
 - 장 소 : 금오산 분수광장
 - 참 석 : 구자근 위원장, 김봉교·이태식·장영석·이홍희 의원
-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포항시-이스탄불 문화교류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13(토) 11:30
 - 장 소 : 경주시 황성공원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박문하·박용선 의원
- **세계유교문화축전 고가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9. 13(토) 19:30
 - 장 소 : 예천 보문 청우정
 - 참 석 : 도기욱 의원

- 농촌진흥청 신청사 개청행사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9. 15(월) 09:30
 - 장 소 : 농촌진흥청 신청사
 - 참 석 : 박현국 의원
- 한국농업경영인 포항시지구연합회 가족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5(월) 11:00
 - 장 소 : 기계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
 - 참 석 : 이정호 위원장
- 해평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연합교육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0:00
 - 장 소 : 구미 해평복지회관
 - 참 석 : 이흥희 의원
- 「이스탄불 in 경주 2014」 안동시-이스탄불 문화교류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0:3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김위한 의원
- 운수면 복지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1:00
 - 장 소 : 고령 운수면 복지회관
 - 참 석 : 박정현 의원

- 「이stanbul in 경주 2014」 영천시-이stanbul 문화교류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4:3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김수용 의원

- 2014 경주시장배 미용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6:00
 - 장 소 : 서라벌문화회관
 - 참 석 : 배진석 의원

- 「이stanbul in 경주 2014」 성주군-이stanbul 문화교류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7: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수경 의원

- 단북면 개면 100주년 기념 가을맞이 작은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9:00
 - 장 소 : 의성 단북면 농업인복지회관 야외공연장
 - 참 석 : 김수문 의원

○ 실크로드 소리길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9. 16(화) 19:30
- 장 소 :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 참 석 : 이진락 부위원장

○ 포항시 새마을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9. 17(수) 10:00
- 장 소 : 해도근린공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2014 영주시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7(수) 10:00
- 장 소 :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황병직 의원

○ 동해안 적조피해현장 방문

- 일 시 : 2014. 9. 17(수) 17:00
- 장 소 : 포항 구룡포읍
- 참 석 : 한창화 위원장, 조주홍 의원

○ 2014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7(수) 11:00
- 장 소 : 해도공원
- 참 석 : 김종영 의원

○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7회 경산시 장애인재
활 증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0: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오세혁 의원

○ 제18회 군민의 날 및 제63회 군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0:00
- 장 소 : 청도 공설운동장
- 참 석 : 정상구 의원

○ 제13회 울릉도 뽕에돔 바다낚시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6:00
- 장 소 : 울릉군민회관
- 참 석 : 남진복 의원

○ 천연가스발전소 준공기념 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4. 9. 18(목) 19:3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산시 새마을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19(금) 11:00
- 장 소 :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열린문화마당
- 참 석 : 조현일 의원

○ 「이stanbul in 경주 2014」 구미시-이stanbul 문화교류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9. 19(금) 14:00
- 장 소 : 경주시 황성공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2014 문경 오미자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9. 19(금) 17:00
- 장 소 : 동로 오미자문화복지센터
- 참 석 : 고우현·박영서 의원

○ 2014년 경산열린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9. 19(금) 19:30
- 장 소 : 하양 조산천 둔지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 자율방범대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0:00
- 장 소 : 군위초등학교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2014 청송꿀맛사과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9. 21(일) 11:00
- 장 소 : 청송 용전천 착륙장
- 참 석 : 윤중도 의원

- 제3회 사회복지한마당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공청회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0:00
 - 장 소 : 의성문화회관
 - 참 석 : 최태림 의원
-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주관 동거부부 전통혼례식 참석
 - 일 시 : 2014. 9. 20(토) 11:30
 - 장 소 : 연호공원 야외공연장 일원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제47회 포항향토청년회 회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9. 21(일) 11:00
 - 장 소 : 포항종합운동장
 - 참 석 : 장두욱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4년 9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인중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 >>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을 하고 폭력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심각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대책 중 여성 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성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3년 간 경북도내 여성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021건에서 2013년에는 1,879건으로 83.9%나 급증하였습

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경우 2011년에 170건에서 2013년에는 568건으로 230% 이상 폭증하였으며, 성폭력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689건에서 2013년도 1,065건으로 54.6% 증가하여 도내 여성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도 차원에서도 여성 폭력 예방사업 및 피해여성에게 상담과 긴급피난처 제공 및 의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한 도비지원 예산이 2011년도에 5억 2,0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9억 4,400여 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지만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단편적이고 단순히 국비지원 사업에 매칭지원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고 관련기관 간에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와 관련하여 경북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대구를 비롯한 경산, 영천, 청도, 칠곡군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성주와 고령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포항, 경주, 안동 등 시·군 7개 지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은 대구지역이 대부분의 관할지역인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5,000만원, 대구서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원씩 만 지원될 뿐 오히려 도내 기타 시·군의 센터에서는 도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내 시·군의 여성폭력 현황과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적으로도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여성폭력예방을 위하여 도 차원의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여성폭력의 사회적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주로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에 국한되었지만 올해부터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통합예방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 차원의 자체적인 예방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도 차원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제도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단편적인 생필품 지원 등에 국한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지원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보호 지원기관과 연계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 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소명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4년 9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이정호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사고대응 관련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9월 10일 발생한 포스코엠텍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KBS 9시 뉴스를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이 분진이 이산화규소라는 분진인데 정말 30분 넘게 눈 오듯이 이렇게 내린 현장입니다.

저에게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발생한 포항 포스코엠텍사의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의 하나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2년 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도내 유독물질을 비롯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어느 지역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포스코엠텍사의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 사고에 대한 경북도의 안일한 대처와 허술한 관리·감독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우리 경북도에서는 환경오염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체계에 대해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코엠텍사의 이산화규소 분진 유출사고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페로실리콘 공장을 포스코로부터 유치하면서도 도비 15억원, 시비 30억원 총 45억원을 지원하여 작년 5월 28일 준공하여 1년 남짓 가동한 시점에서 크고 작은 집진기 분진 발생사고가 이미 5차례나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 16개 집진실 집진필터 중 2개의 집진기 필터 탈락으로 대량의 이산화규소가 걸러지지 않고 굴뚝으로 배출되어 인근 주민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진으로 각종 호흡기 곤란과 오염 등으로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거친 집진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북도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의 부재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3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 보면 도내 도본청 관할과 시·군 관할 총 3,629개 업소 중 282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위반율이 7.7%에 달하였고 이 중 도 관할은 187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건의 위반사항이 발생

하여 위반율이 20.3%에 달해 도에서 관할하는 업소의 위반 사항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가 관할하고 있는 포스코엠텍사의 사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전 관리·감독이 너무나 미흡했고 사고발생시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은 현장방문으로 증거부족, 적극적 행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사고발생 당시에만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적극적 대응을 약속하지만 이내 잠잠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각종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사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의 횟수를 늘리고 위반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303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중 92개소가 포항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차라리 도에서 갖지 말고 해당 시·군에 위임하거나 적어도 배출업소가 많은 시·군에는 출장소를 두어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환경오염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민을 보호하고 유사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4년 9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정체성 확립 관련 >>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개막한 터키문화축제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바로 어제 22일까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관람객 48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진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 평소 보기 어려운 이국적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터키전통시장에는 그야말로 인산 인해를 이루는 등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관광객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스탄불 in 경주 2014는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 주최한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등에 이은 국제적 문화축제로 한류 확산과 국격을 높이고 나아가 경북이 대한민국의 지방외교사절로서 세계와 소통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음은 매우 기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터키문화축제 이스탄불 in 경주 2014의 진행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정말 오늘이 아닌 미래를 봐야하고 화려한 겉모습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진정한 글로벌 문화축제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또한 문화를 통해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 문화의 현장에 우리의 문화역량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민족의 여정을 복원하고 21세기 문화실크로드를 만들려는 시점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향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캄보디아,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려면 신라의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하고도 찬란한 문화로까지 개념의 외연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주제인 신라문화 외에 우리 경북은 너무나도 찬란한 가야문화, 유교문화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족 3대 문화의 본류에 독특한 해양문화까지 아우르고 있는 우리 경북은 그 어느 지역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체계적으로 전승·발전시켜 고유하고도 독창성 있는 경북만의 문화와 콘텐츠로 보강하고, 이를 확대하여 유라시아 교류 확대의 발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문화엑스포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른 경주의 불교문화와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는 새로운 실크로드 시작점으로 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교류를 통한 진정한 글로벌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경북의 문화적 저력을 국제적으로 각인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라의 문화에 한정하기 보다는 우리 경북만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도 독창적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한데 모아 문화적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스탄불 in 경주 2014 문화축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경주문화만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마치 들러리를 서는 듯한 초라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가 유라시아를 차세대 핵심 문화교류지역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시도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글로벌 문화축제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 단순히 경주의 축제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신라문화를 모태로 하는 경북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경북도와 문화엑스포가 주축이 되어 우리 경북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로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9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진취적인 국제통상교류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시대의 필수요건인 국제친선교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진취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동안 한해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 9명의 단원들과 함께 러시아 유일의 섬 자치주이자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할린주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이 지워지고 날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지구촌화되어 가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국제간의 교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999년 4월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으로서 제10대 의회가 출범하고 국제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첫 번째 방문지로 러시아 사할린주를 선택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남한과 비슷한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고작 51만 명에 불과한 사할린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가 언급한 ‘척박한 유배지’라는 선입관과는 전혀 다른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난 ‘기회의 땅’으로 바뀌어 있었고, 광활한 대지 위에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할린주 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 7천여 한인들이 모국인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한국어를 구사하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사할린섬의 주역이 되어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일·소 협약에 따라 30만 일본인들은 모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만 우리 동포들은 끝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온갖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 하면서까지 소련 국적 취득을 거부한 채 기다리며 버려졌던 한인 1세대들, 이들이 바로 지금의 3만 7천여 사할린 한인의 선조들이고 그 70%는 경상도가 고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공식일정으로 우리 방문단 일행이 사할린주 의회를 찾았을 때 상호평등과 호혜라는 원칙이 결여된 의전절차와 무관심은 양국 교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음을 예고하는 듯 하였습니다.

1999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경상북도의회가 네 차례, 사할린 주의회가 단 한 차례 방문이 있었을 뿐 두 기관의 관심과 노력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형식적 교류를 왜 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조차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과 같이 사할린주와 자매결연 중인 일본의 홋카이도현이 자국민이 없어도 사할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원 개설은 물론 TV를 통한 일본어교육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홋카이도와 사할린 간의 해저터널 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4만여 동포가 살고 있는 우리과는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혜련 단장께서 우리 한인들의 복지와 문화 분야 등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여 주의회 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덧붙여 주의회 의원들의 정중한 경상북도의회 방문 요청을 예프레모프 의장이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방문의 큰 성과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5년에는 예프레모프 의장을 비롯한 사할린주의회의 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사할린주의회의 답방을 계기로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4만여 한인 1, 2, 3세들이 살아가는 사할린주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여 가장 성공한 국제교류를 예시할 때 경상북도의회와 사할린 경우가 거론되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예산편성, 문화예술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 의지와 책임 있는 노력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10월 8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증대 관련 >>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금 도청 정문에는 경북농업 회생을 촉구하며 농민들이 1주일째 단식 중에 있습니다. 국내 쌀시장 전면개방,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농민들에게 도지사께서는 경북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농민들의 현장의 소리임을 깊이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실손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경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면적은 1만 8,500ha로 전국 3위, 가입 농가수는 2만 3,000호로 전국 2위입니다. 제도도입 이후 지난 13년간 재해를 입은 도내 농가 5만여 농가에 4,478억원의 보험이 지급되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입면적이 2012년 1만 8,743ha에서 2013년 1만 8,557ha로 감소하고 있어 본 의원은 걱정이 큼니다. 가입이 감소한 원인은 장래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보상되지 않는 소멸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인만큼 현재 보험료 부담은 전국 공통으로 국비 50% 지원과 지역에 따라 도비, 시·군비로 25% 내지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민 자부담은 20% 내지 25%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5%, 시·군비 지원율이 20%임에 따라 농민부담은 25%인 상황이며, 전국 최대생산품인 사과의 경우 농가당 총 보험료는 평균 557만원으로 자부담 비율 25% 적용 시 농가당 14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타 시·도는 농민부담률이 20% 정도로 우리 도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전남도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10%, 시·군비 지원율이 20%로 농민부담은 20%인 상황입니다. 경기, 강원, 충남의 경우도 농민부담률이 20%로 우리 도보다 낮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똑같은 농민이지만 경북의 농민만이 타 시·도 농민에 비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 현행 5%인 도비 지원율을 10%로

상향했을 시 농가부담은 총 4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사과재배농가의 경우 도비 5% 지원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평균 140만원인 것이 도비 10% 지원 시 농가부담은 112만원으로 떨어져 농가당 28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제조업은 수혜를 보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 EU와의 FTA보다 2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전국 최대 농업생산지인 경북지역 농민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FTA로 농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여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차제에 국비 지원율을 60% 상향시켜 나가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제1의 농도인 우리 경북도가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책무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이를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10월 8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이흥희 의원(농수산위원회) ◎

<< 대구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관련 >>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구·경북의 대표산업인 ICT 산업은 디지털에서 스마트를 거쳐 융합ICT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ICT의 중요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투자와 R&D 역량이 매우 부족하여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본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특구는 산업, 기술, 지역 등 혁신 정책을 통해 지식기반중심경제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특구 내 산·학·연 협력모델의 구축과 기술개발에 대한 창업과 사업화를 유도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등 국가기술의 혁신 및 경제체질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전국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2014년 현재 네 곳으로 대덕, 광주, 부산 및 대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

연구개발특구는 특허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3개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 기업이 16개 정도에 불과하여 특구에서 개발된 특구기술의 사업화 기반이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구의 연구개발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기반의 조성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첨단산업인프라가 구축된 구미를 대구특구로 추가 지정한다면 대전 등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업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전특구의 경우 5개 지구에 68km², 부산특구는 6개 지구에 147km²인데 비해 대구특구는 7개 지구에 22km²에 불과하여 다른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지정된 면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구특구를 구미로 확대 지정한다면 철곡의 융합R&D지구 및 동구의 의료R&D지구와 구미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구조 고도화 정책이 맞물려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성서 첨단산업지구와 구미 전자통신분야의 전통적 IT 기업 간의 협조를 통해 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바 이는 곧 경북과 대구 경제의 핵심동력을 얻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구미는 기존 산업단지에 3,103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ICT의 융합산업을 중심으로 제5단지를 조성 중에 있어 많은 기술개발수요가 예상됩니다.

이런 구미를 특구에 추가 지정한다면 특구 내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의 7%, 경북의 68%이며 무역수지흑자는 245억불로써 전국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해 볼 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존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경북과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핵심적인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부산과 경남의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특구발전을 위해 김해, 창원을 특구로 확대 지정하여 세부분야를 추가하는 등 특구의 변경을 추진한 선례가 있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추가 지정의 열쇠는 대구시가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구미가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다면 같은 경제권에 있는 대구에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하루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구미가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4년 10월 8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김정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협회 설립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도청 정문 앞의 시위에서 보듯 사회단체 허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업을 뒤로한 채 도청 정문 앞에서 열흘 동안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발생의 원인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협회의 설립을 둘러싼 장애인단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 이지만, 법인설립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경상북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도지사께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신 덕분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어 다행스러우며 장애인 당사자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북도 장애인 복지 행정의 무사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행정의 기본은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유사단체의

난립을 제한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유사 동일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복수의 장애인단체에 가입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행정적 발상이라면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10개든 100개든 유사한 장애인단체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유사한 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어 결국 행정업무의 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은 적법성과 절차만을 원하는 소극적 행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해당부서에서 법인설립 허가 전 이해관계당사자를 불러 의견청취나 중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 보면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복지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허가 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유사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예견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번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신중함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저마다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회단체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명칭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파장과 해당 단체 회원 간의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10월 8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 >>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떠한 대응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해체의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원전해체 정책을 입안하고, 원전해체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나라 노후 원전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이고, 그중에서 최초 가동이 시작된 고리 1호기가 2007년에 추가로 10년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2018년쯤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고, 경주 월성 1호기도 현재 수명연장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국내에서 상업 중인 원전 23기 중에 절반이 넘는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게 되어 정부에서는 원전해체연구

센터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입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2018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경쟁현황을 보면 올 3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모두 8곳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주를 비롯해서 다른 몇 개 시·군에서도 유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고리원전 해체를 전제로 이미 부지선정을 마치고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들 두 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유치 전략까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는 어떠한가요?

타 시·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데도 우리 경북도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관련 시·군 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부지선정을 매듭짓고 도차원에서 최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부터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고, 둘째, 건설 및 운영 중인 국내원전 28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셋째, 우리 도내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심지어 방폐장까지 있어서 원전관련 시설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성과 당위성, 입지조건 등에서 우리 도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도내 여러 시·군이 경합할 경우에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북의 결집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도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원전해체안전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래 경북의 도약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는 우리 도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느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보다 강력한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 조례안 : 12건
- ☐ 규칙안 : 1건
- ☐ 동의안 : 1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통상,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과학기술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공공기관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3. 국회, 정당, 의회,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안전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

국·지역균형건설국·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도청신도시
본부(한시기구)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평가 및 조직 관리,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운영, 투자심사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운영, 세원 조사, 세입자금의 관리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소청, 행정심판,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3.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정책,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조경제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보안 및 일반포상
2. 공인 및 문서관리
3. 주민등록,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조정 및 시군행정의 종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
6. 자체방호 및 예비군 훈련
7. 안전기획, 안전문화 등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리 및 재난상황실 및 경보통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후생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새마을운동,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 민간협력, 평생교육, 학교협력에 관한 사항

14. 공사·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5. 관용차량·중장비 및 관공선,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정 정보화사업, 사이버 정보보안, 행정시스템 및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중무, 문화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기획, 문화산업, 문화기반, 문화실크로드·엑스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4. 관광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축산유통국) 농축산유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발전 중장기계획 및 농산물유통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수·
축산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재해 대책·복구·지원,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쌀 산업 대책 등 안정적 식량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예·특작·과수화훼·양잠 등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축산업 구조개선, 경영관리,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산림자원국)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3. 수질·대기환경·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
4. 배출시설 지도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5.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
6.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관리, 물 융합 산업 육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7.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보전, 산림의 보전·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이재민구호,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4. 효 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 및 가정의례지도,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재활업무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질병예방 및 방역, 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에 관한 사항
7. 모자보건 사업,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지도·지원 및 지방의료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지역균형건설국)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토지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 지역특화, 지역행복생활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철도, 공항 등) 종합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 도로정책 및 신공항에 관한 사항
8. 건축, 주택,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9. 토지 및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 및 보존,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3. 어촌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어업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수산시설 확충, 수산자원 보호, 어업자원·지도에 관한 사항
6. 독도정책·연구·홍보, 독도영유권 확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해양·수산 진흥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청신도시본부) 도청신도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청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청신도시 유관기관 이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지조성, 기반시설, 주택·택지분양 등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화재진압 및 예방지도
4. 소방시설·장비 등 관리
5. 인명구조·구급활동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지도
6. 특수재해의 구조활동
7. 긴급 구조·구난
8.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원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에 둔다.

제19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3.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
 4. 비료·농약·토양·병해충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관리·이용기술 개발 연구
 7.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교육
 8.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기능훈련
 9. 농업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 육성
 10. 농업과학기술 보급
 11. 산학협동 및 해외기술 협력
 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13.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가공 기술지도
 14.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
 15.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6. 농업인에 대한 영농·생활기술·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 정보 제공
 17.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8. 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 및 농어업 정보종합 전산망 관리
 19. 농어업 정보기술보급 인터넷방송
 20. 기타 농업발전 및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 ①** 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

소·유기농업연구소·성주과채류시험장·청도복숭아시험장·영양고추시험장·상주감시험장·봉화약초시험장·구미화훼시험장·풍기인삼시험장을 둔다.

②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1에 둔다.

제23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5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에 둔다.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감염병, 식중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토양 및 유해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질병 예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각종 감시사업 및 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2. 상수도관리·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가축분뇨처리기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28조(하부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소방학교

제29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에 둔다.

제30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직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소방공무원의 피교육자 차출과 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7. 소방교재연구 및 편찬
8. 소방교육훈련 및 분임 연구지도
9. 응급 구조사 양성교육
10. 기타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3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
5. 화재의 진입 및 구조·구급활동
6.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7.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9. 화재의 예방 및 홍보
10. 화재조사

제35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두고,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경북도립대학교

제3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학교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에 둔다.

제37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38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농업자원관리원

제39조(설치) ①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55에 둔다.

제40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2. 종자개량·잠엽·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개발

제42조(하부조직)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가축위생시험소

제43조(설치) ① 가축질병의 방역과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이하 “가축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축위생시험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에 둔다.

제44조(소장) 가축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원인규명 및 검정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

4. 중앙방역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5.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제46조(하부조직)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 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축산기술연구소

제47조(설치) ①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에 둔다.

제48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첨단 축산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
3. 가축의 능력검증 및 육종개량
4. 고품질·기능성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5. 우량종축의 생산 및 보급
6. 생명공학기법 응용 축산기술 개발

7. 고능력 수정란의 생산 및 보급
8. 돼지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9. 사료자원재배 및 시험연구
10.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기술 개발
11. 축산농가 연계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보급
12. 축산농가 기술상담 및 교육
13. 기타 축산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절 수산자원연구소

제50조(설치) ① 도의 바다와 내수면의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이하 “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산자원연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둔다.

제51조(소장) 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패류 등 기술개발이 된 품종의 종묘 생산
2. 지역 특산품종의 종묘 생산기술 연구·개발
3. 우량품종의 종보존 및 수정란 생산보급
4. 먹이생물 원종보존·배양 및 보급

5. 유용 수산자원 유전자보존
6.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7. 생산종묘의 유·무상방류 및 사후관리
8. 양식어가 기술교육 및 새로운 양식품종 보급
9. 연어의 인공부화 및 사육·방류
10. 담수어의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
11. 내수면 토속어종 보존
12. 기타 수산자원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53조(하부조직)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산림환경연구원

제54조(설치) ① 임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토경관보전과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산림문화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에 둔다.

제55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4.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5. 사방사업의 설계·시행 및 사방시설의 관리
 6. 도유림 육성 관리
 7.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행
 8. 산사태 예방 및 복구
 9. 산림병해충 예찰·방역 및 상담지도
 10.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
 11. 산림병원 및 산림학교 운영
 12.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3. 도시 조경사업 시행
 14. 기타 임업발전 및 산림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제57조(하부조직)**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 관할 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종합건설사업소

- 제58조(설치)** 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합건설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종합건설사업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67-24에 둔다.

제59조(소장) 종합건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
3. 건설기계의 운영 및 관리
4. 건설기계의 정비·수리·기술검사관리
5. 건설기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 관리
6.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7.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운행 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재료시험 및 물품관리
10.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61조(하부조직)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 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제62조(설치) ① 팔공산도립공원과 가산산성야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1034에 둔다.

제63조(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립공원의 조성 및 개발
2. 도립공원 자원 및 시설보호
3. 도립공원과 가산산성야영장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4. 가산산성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
5. 기타 도립공원 및 야영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절 서울지사

제65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자료수집, 투자유치·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서울지사(이하 “서울지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서울지사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66조(지사장) 서울지사에 지사장을 두고, 지사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지사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직판활동 지원
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
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6. 재경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9절 산림자원개발원

제68조(설치) ① 도내 산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과 야생동물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이하 “산림자원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자원개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89에 둔다.

제69조(원장) 산림자원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2. 소득식물 생태 숲·야생동물생태공원·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3. 산림 사료의 수집·보관 및 연구
 4. 임산물의 판매·유통지원
 5. 전통산림문화의 보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야생화 증식·보급 및 품종개발
 7. 전통 목재 이용기술의 조사 및 연구·개발
 8. 야생동물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및 증식·보급에 관한 사항
 9. 야생조수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약용식물·특산식물의 품종개발 및 상품화
 11.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토종산림 동식물의 특수이용 가공에 관한 연구
 13. 특용식물 자연생태 및 증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14. 자연산 동식물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
 15. 수목원관리소의 관리·운영
 16. 수목장림 설치 및 운영
 17. 기타 산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제71조(하부조직)** 산림자원개발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지소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72조(설치) ① 만성질환 및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노인전문간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에 둔다.

제73조(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문요양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3. 요양치료·간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
4. 간병전문요원 교육·양성

제11절 어업기술센터

제75조(설치) 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어업 기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이하 “어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어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에 둔다.

제76조(소장) 어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2.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
3. 수산자원회복 및 육성지도
4. 어업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8조(하부조직) 어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 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지소의 명칭·위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해안 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도청 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경북개혁추진단,

투자유치실”로 “일자리투자본부”를 “일자리민생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 인재
개발정책관”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환경산림국”을 “환경산림자원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농축산국”을 “농축산유통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도청이전추진본부”를 “도청신도시본부”
로, “건설도시방재국”을 “지역균형건설국”으로 한다.

[별표 1]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
(제2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생물자원연구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북평로 6131	
유기농업연구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의성사곡로 344	
성주과채류시험장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	
청도복숭아시험장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라길 186-6	
영양 고추 시험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	
상 주 감 시 험 장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	
봉화약초시험장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	
구미 화훼 시험장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	
풍기 인삼 시험장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황산로 67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상산로 322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면 주들길 37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30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도 공무원 평정시기가 매년 6월, 12월에서 4월,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평정기간에 대한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1월 1일부터”로 수정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1월 1일부터”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14년 1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공무원평정 시기와 일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27명”을 “5,1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033명”을 “3,05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98명”을 “102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1% 이내	33% 이내	11%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상당
비 율	30% 이내	50% 이내	-	15% 이내	5%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7% 이내	8% 이내	16% 이내	30% 이내	35%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5,157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817	-				
	2 ~ 3급	1		1			
	3급	11	10		1		
	3 ~ 4급	2	2				
	4급	78	56	7	5	9	1
	5급 이하	1,714	-				
	전문경력관	11	-				
별 정 직	소 계	14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0	-				
연 구 직	소 계	196	-				
	연구관	39	1		37	1	
	연구사	157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10			10		
	지도사	17	-				
소 방 직	소 계	3,059	-				
	소방정	20	3		17		
	소방령 이하	3,039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명)		존 속 기 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5	일반직 : 3급 2, 4급 1, 5급 이하 2		
경북개혁추진단	1	일반직 : 4급 1	2015. 6. 30	
문화관광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 31	문경세계 군인체육 대회지원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5. 8. 31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4. 12. 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127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 ----- <u>5,157명</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3,033명</u>	2. ----- ----- <u>3,059명</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98명</u>	4. ----- <u>102명</u>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30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도 공무원 평정시기가 매년 6월, 12월에서 4월,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평정기간에 대한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1월 1일부터”로 수정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1월 1일부터”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평정시기와 일치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도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 3 조(위원회의 설치) 도는 시와 공동으로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계획·정책
2. 시·도 공동협력사업(아젠다)
3. 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 5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④위촉직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 6 조(위원의 임기) ①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도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

2. 위원회 등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

⑤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제안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합의 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 ①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분담)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조사·연구 및 공동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도가 분담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 원 회

제 3 조(위원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자리창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정책과 연계된 도 일자리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일자리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청년일자리분과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청년·여성 및 서민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6 조(분과위원회) ①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
2. 여성일자리분과위원회
3. 서민일자리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8명 내외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7 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각 분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전체 위원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도지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보좌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제 3 장 보 칙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 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의견수렴 등) 도지사는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 3 조(지원대상) 이주지원비 지원대상은 이전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제 4 조(지원기준)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 지급대상

- 경북도청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으로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 제외대상자

-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제3호라목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9호가목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는 사람
- 군복무중인 공익요원, 징병검사 전담의
-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자
-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자

☐ 지급액 : 직원 1명당 월 30만원

-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
- 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달 10일 이내

- 그달분을 다음 달 초에 지급하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 지급기간 : 도청 소재지 이전일로 부터 3년간

- 도청 소재지 이전일은 신도청 소재지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날로 한다.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 3 조(적용) ①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2. 축산물,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
3.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4.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도의 심별마크 모양으로 도안
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제 5 조(계기의 사용) ①도지사는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
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 세입
관리 부서와 사용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발행개
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 ①도지사는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계기관리책임공무원이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수입금의 납입)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은 정산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9 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기존에 발행 · 사용하던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시군에서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로, “첨부”를 “날인”으로, “첨부가”를 “날인이”로 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부서명 :

발행일자 :

정산금액 : (전날) 원

(오늘) 원

(월계) 원 (누계) 원

	담당자	담당	부서장
결 재			

(오늘 발행 내역)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소				
청구사유					
청구내역	액면금액	원	환매금액	원	
권종별	구분	수량	액면금액	공제액(수수료)	환매금액
	계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 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할아버지'를 말한다.

제 3 조(할매·할배의 날)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제 4 조(사업)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5 조(지원) ①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4년 10월 8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조례 목적 달성과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문안을 수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효를 장려하는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홍보사업, 문화체험활동 등 구체적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3. 수정안 : 불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사업)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안 제5조제1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의 “비용”을 “예산”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u>제 4 조(행사 등) ①할매·할배의 날은 기념행사와 각종 효를 장려하는 행사, 교육 등을 할 수 있다.</u> <u>②할매·할배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	<u>제 4 조(사업)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 <u>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 관계증진사업</u> <u>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 대회 등 홍보사업</u> <u>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u> <u>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u>
<u>제 5 조(지원) ①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u>	<u>제 5 조(지원) ①-----</u> ----- -----<u>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예산-----</u> ----- -----.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로 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3.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제 4 조(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식품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①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2. 기부식품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 7 조(지도·감독 등) ①도지사는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평가 및 포상)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과 경상북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문화융성 계획 및 정책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융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 장·단기 정책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융성의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남, 여)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5 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정책에 관하여 자문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 6 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7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8 조(회의) ①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분과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부터 자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문화융성 등 관련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24일

제 출 자 : 문 화 환 경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분야별 대표성과 상징성이 미약하고, 분과위원회 규모를 반드시 5개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논의되어, 5개 분과위원회 명칭을 규정한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5개 명칭 삭제(개정안 제5조)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 5 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찾아가는 민생문화 분과위원회 2. 산수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3. 전통문화 인문진흥 분과위원회 4. 문화산업 국제교류진흥 분과위원회 5. 문화예술인 귀촌운동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정책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 5 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정책에 관하여 자문한다. ②(개정안과 같음)	분과위원회 명칭이 분야별 대표성과 상징성이 미약하고, 분과위원회 규정만 덩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
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및 전시
2. 산림에 관한 학술연구 및 조사
3.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산림관련 전시회 개최 및 산림문화 발굴
5.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6. 그 밖의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 4 조(입장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말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5 조(입장료 및 관람료) 박물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 6 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 7 조(행위의 제한) ①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8 조(휴관)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변상조치)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①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장품의 수집) ①도지사는 산림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장품의 관리) ①도지사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과학박물관의 일정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해 축산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물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제 5 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지원
3. 법 제50조에 따른 가축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융자지원사업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 6 조(지원기준) ①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피해농가를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 7 조(지원절차)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8 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2. 신규 가축입식 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 9 조(협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대처할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축산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경상북도 축산업무 담당과장
3. 시·군 축산업무 담당과장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대구사무소장
5. 수의·축산 관련 대학교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사무국장
7.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8. 생산자 단체 도지부장(지회·협의회)
9.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①협의회에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회의) ①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 의회 의원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참여자 지원 및 포상) ①도지사는 가축의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전염병 예방) ①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가축 사육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사항) ①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매물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가축 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상북도 가축방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가 수행한 행위는 제9조의 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서지역의 동절기 여객선 정상
운행을 위해 선박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
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선박용 유류비(이하 “유류비”라 한다)”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로 오갈 때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를 말한다.

4. “유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여객선 운항시 유류비에서 운항수익을 감한 금액에 대해 여객선사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서지역 관할 군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지급된 것을 말한다.

제 3 조(보조금 지원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도서지역 관할 군수에게 동절기 유류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지역 관할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 일정액은 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기간은 매년 동절기 1월에서 2월까지로 한다.

③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도서지역 관할 군수에게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도서지역 관할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제 4 조(지원대상) ①제3조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수사업 면허를 받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해상여객운수사업자는 매년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도서지역 관할 군수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동절기 도서지역 주민 수송계획 수립) ①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여객선사는 동절기 도서지역 주민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선 정기검사 시 대체 여객선에 대해 도지사, 도서지역 관할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여객선사는 대체여객선 기준을 본 여객선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조(사후관리) ①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여객선사에게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게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홍보) 여객선사는 보조금 지원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 칙 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을 “이 규칙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회부)”를 “(의안의 배부 및 회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쇄하여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하고”로 한다.

제31조 중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을 “의안의 의결이 있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및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안전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73조의3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교육감”으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본회의 외빈 등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89조”를 각각 “제9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 ————— ————— ————— ————— —————
제16조(휴회) ①(생략) ②휴회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휴회) ①(현행과 같음)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생략)	제21조(의안의 배부 및 회부) ①— —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하고 ————— ————— —————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 문구 · 숫자 ·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 의안의 의결이 있는 ————— ————— ————— —————

현행	개정안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및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 -----. ②-----. -----,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②(생략) ③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u>도지사의</u>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생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위원의 동의를 얻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 <u>도지사 또는 교육감</u>-----. ④(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u>도지사</u>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의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구서가 <u>도지사</u> 또는 <u>교육감</u>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u>도지사</u>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⑥(생략) 〈신설〉 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현행과 같음) ②----- -----<u>도지사</u> · <u>교육감</u>----- ----- ----- ----- -----. ③(현행과 같음) ④----- ----- <u>도지사</u> · <u>교육감</u> ----- -----. ⑤~⑥(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본회의 외빈 등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현행	개정안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91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제91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동 의 안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10월 8일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

□ 수여대상자 및 주요공적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요공적
1	피터 풀데 (Peter Fulde)	독일 '36. 4. 6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지선정 평가 심사위원장으로 국제과학벨트 DUP연합캠퍼스 유치 (1조 5천억원) 및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유치·설립 기여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선정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장(現)
2	나상자르갈 (Nasanjargal Tovuudorj)	몽골 '80. 1. 8	- 몽골국립농과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道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과제 책임자로 경북 개발 품종의 몽골 보급 및 도-몽골간 협력사업 가교역할 기여 - 몽골국립농업대학교 원예학과장(現) 경북 농업기술원 공동연구 세부과제책임자(現)

※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회장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에서 제외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24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동의 제안이유

- 명예도민증 수여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¹⁾에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 국적의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회장은 외국인에 해당은 되지만, 개인이 도내에 사회공헌활동을 참여하기보다는 다수의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회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수여대상에서 제외하고, 독일 국적의 피터 풀데(Peter Fulde) 교수와 몽골 국적의 나상자르갈(Nasanjargal Tovuuudorj) 교수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함.

1) 제2조(수여대상)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수정동의 내용

- 독일 국적의 피터 풀데(Peter Fulde) 교수, 몽골 국적의 나상자르갈(Nasanjargal Tovvudorj) 교수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으로 하고, 일본 국적의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회장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에서 제외함.

3. 수여대상자 및 주요공적(수정동의)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요공적
1	피터 풀데 (Peter Fulde)	독일 '36. 4. 6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지선정 평가 심사 위원장으로 국제과학벨트 DUP연합캠퍼스 유치(1조 5천억원) 및 막스플랑크한국 연구소 유치·설립 기여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선정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장(現)
2	나상자르갈 (Nasanjargal Tovvudorj)	몽골 '80. 1. 8	• 몽골국립농과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道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과제 책임자로 경북 개발품종의 몽골 보급 및 도-몽골간 협력사업 가교역할 기여 • 몽골국립농업대학교 원예학과장(現) 경북 농업기술원 공동연구 세부과제책임자(現)

*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회장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에서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공로조서 붙임

공 로 조 서

인적사항	성명	Peter Fulde (피터 폴데)	생년월일	1936. 4. 6		
	국적	독일				
	소속(직위)	(재)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명예 소장				
	주소 (독일/한국)	Noethnitzer Straße 3801187 Dresden Germany(Max Planck Institute for the Physics of Complex Systems) 경북 포항 남구 청암로77 포항공대 무은재 기념관 501호				
공로사항	○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내 유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과학벨트 DUP(대구, 울산, 포항) 연합캠퍼스 유치(1조 5천억원) 등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3대 소장(2007. 4월 ~ 2013. 7월) 및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하면서 지역 기초과학 연구, 인재양성, 국제 역량강화 등 道 과학기술 위상 제고 기여 ○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道 유치 추진위원(2008. 7월 ~ 2011. 7월) 독일 측의 재단 창립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유치·설립에 기여					
주요경력	학 력	1963년 미국 Maryland대학 박사				
		독일 Humbolt 대학 학사				
		1998 ~ 197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인문 이학 명예 박사				
	경 력	1968 ~ 1971년, 독일 Frankfurt 대학 물리학과 교수				
		1974 ~ 1993년, 막스플랑크-고체물리연구소(MPI-FKF) 소장				
		1993 ~ 2007년, 막스플랑크 복잡계물리연구소 초대 소장				
		2007 ~ 2013년, (재)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소장				
		2007 ~ 2013년,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석좌교수				
		2012년 ~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선정 평가위원회 심사 위원장				
	수상내역	2006년, 독일 드레스덴 Leibniz Medal 수상				
2007년, 독일작센주 공로훈장 수상						
2009년, 대만 국립과학위원회 Tsungming Tu Award 수상						
기타사항						

공 로 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나상자르갈 Nasanjargal Tovuudorj	생년월일	1980. 1. 8	
	국 적	몽골(Mongolia)			
	소속(직위)	몽골국립농과대학(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			
	주 소	School of Agrobiolgy, MSUA, Zaisan 210153, Mongolia			
공 로 사 항	○ 나상자르갈 교수는 몽골국립대학교에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시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몽골국립농과대학 교수로 재임 하면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세부과제 책임자로 농업 유용 유전자원 수집 및 도입,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의 몽골 적응성 검토 등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교수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골 UB(울란바타르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시 몽골 현지 일정 조율, 접촉인사 소개, 상호 방문, 통역 등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북도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간 상호 우호적 교류협력사업에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음.				
주 요 경 력	학 력	몽골국립대학교 생물학과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석박사			
	경 력	몽골국립농업대학교 교수			
		몽골국립농업대학교 원예학과장			
		경북농업기술원 공동연구 세부과제책임자			
	수상내역	몽골국립농과대학 2013년 우수학과상 수상			
특이사항					

의정활동보고서

(제271~272회 임시회, 제273회 정례회)



2014. 11. 인쇄 / 2014.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